위탁판매 약정금액 및 판매수수료 산정방법과 지급에 관한 계약서

| 작성일자 : | 년 | 월 | 일 | |
|--------|---|---|------|--|
| | | | | |
| | | | _ | |
| 사업주명 | | | (6J) | |

점포운영 판매수수료 산정 기준표

"을"은 "갑"이 투자해 만든 점포 및 점포에 있는 시설,장비,간판,브랜드,타이어,상품 등을 사용하여 판매수수료를 사업수입으로 하는 사업주로서 계약하는 것임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계약합니다.

또한, "을"은 "갑"과의 계약관계에서 "갑"소유의 점포 및 시설장비와 타이어 상품등을 사용하는 대신에 점포운영용역수수료 산정시 기준이 되는 위탁판매약정금액에 대해 충분히 인지 및 확인하고 계약합니다.

| 가. 위탁판매약정금액 = (| 원) 점명: |
|-----------------|--------|
|-----------------|--------|

1. 위탁판매약정은 위탁자는 물건을 얼마만큼 팔아달라고 하고 수탁자도 그만큼 물건을 팔아주겠다는 것으로 계약이 성립됩니다. 계약이 성립되면 타이어뱅크(주)는 사업주에게 점포를 위탁하고 타이어뱅크 사업주는 점포를 수탁 운영하면서 타이어를 위탁판매하게 됩니다.

"갑"과 "을"간에 위,수탁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위탁판매 약정금액이 필수 요건입니다. 즉, 위탁판매 약정금액 없이는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고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위탁판매 약정금액은 점포운영용역수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위탁판매 약정금액은 시장규모, 투자규모, 사업장위치, 경쟁관계 등 점포마다의 경영적. 지리적 환경을 고려하여 "갑"이 책정하며 "을"은 "갑"이 책정한 위탁판매약정금 액과 판매수수료 산정방법에 대하여 수용하고 또한,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합니다.

2. 위탁판매 약정금액 조정

① 공동의 브랜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브랜드 관리 차원에서 사업장별 평가제도가 있으며 이에 의거하여 위탁판매약정금액이 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② 리모델링 등의 변경과 점포 주변의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여 점포운영 환경이 변경될 시에 위탁판매약정금액'이 조정될 수 있고 또한, 점포 주변의 다양한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매년 1회 조정할 수 있습니다.
- ③ 타이어 메이커의 공급가 인상 및 공장도가 인상 시 이를 반영하여 '위탁판매약정금 액'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 3. 위탁판매약정금액 변경시 위,수탁계약서 중 '위탁판매 약정금액 및 판매수수료 산정방법과 지급에 관한 계약서'를 재작성합니다.

나. 타이어 종류별 판매수수료

1. 타이어 종류별 판매수수료

- ① 타이어종류별 판매수수료는 공장도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적용한 값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② 타이어 종류별 판매수수료의 산정기준은 아래 수수료율에 의거 산정하며 공장도 대비 판매수수료율 만큼이 "을"에게 지급하는 타이어 종류별 판매수수료입니다.

표1)<판매수수료율 (공장도가격 기준)>

| 상품명 | 넥센 N-mi2 (55) | 넥센 N-mi2 (60) | 넥센 N-55 | 넥센 N-60 | OPERA -55 | OPERA -60 | OPERA -70 | 금호 UHP | 금호 KH17 | 금호 OPERA GOLD | GТ | 콘티넨탈 |
|----------------|---------------------|---------------------|------------|------------|--------------|--------------|--------------|------------|------------|---------------------|-----|------------------------------------|
| 공장도대비 판매수수료 | 42% | 32% | 32% | 27% | 42% | 32% | 27% | 28% | 33% | 40% | 30% | 40% |
| 상품명 | 던롭 | 피렐리 | 요코 | 던롭 (고급) | 미쉐린 P1 | 미쉐린 P2 | 미쉐린 P3 | 미쉐린 P/S | BFG | OPERA SUV | 굳이어 | 비고 (기타) |
| 공장도대비 판매수수료 | 32% | 40% | 34% | 36% | 36% | 32% | 32% | 40% | 33% | 36% | 40% | 기타 추가 타이어는 수탁 수수료청구서 에 반영 |

③ 계약기간 내 "타이어메이커"의 공장도 가격 변동 시에는 변동가를 기준으로 하고, 공장도 대비 판매수수료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④ 타이어메이커의 공급조건 및 시장 상황에 따라 판매수수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⑤ 변경되는 공급 상품 및 판매수수료율 확인은 매월 제출하는 수탁수수료청구서에 반 영하여 정산하고 서명하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용어 정의〉

- A. "UHP"란 55시리즈이하, 16인치 이상의 규격을 의미한다. 단, 특정 규격의 경우 "갑"의 조건에 따라 UHP에서 제외될 수 있다.
- B. "60"이란 60,65Series를 의미한다.
- C. "70"이란 70Series를 의미한다.
- D. 그 외 용어의 해석으로 문제 발생될 경우 "갑"의 해석을 따른다.

2. 추가수수료

- ① 추가수수료는 "갑"이 "을" 지원하는 시혜적인 것으로 "갑"이 정하는 것이며 타이어 종류별 판매수수료 외에 추가수수료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 즉, "갑"이 판단하여 시장 및 경영 상황에 따라 "을"에게 시혜적으로 지급하는 항목입니다.
- ② 추가수수료는 "갑"의 정책변화에 따라 지원하는 것으로 플러스 추가수수료가 존재하나, 재고관리문제 등 문제발생시 추가수수료가 삭감되거나 마이너스 추가수수료 항목이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합니다.

단 "을"은 모든 추가수수료를 지원받지 않는 조건으로도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수수료를 지원받는다 / 추가수수료를 지원받지 않는다 중 택하여 하단에 기록)

- ③ "갑"은 "을"의 행위가 위수탁계약서 제36조 "계약의 해지 및 갱신거절"에 해당 하는 경우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④ "을"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9조 제1항). 다만 계

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민법 제689조 제2항, 민법 제389조), 해지 직전 3개월분의 추가수수료 금액을 "을"이 "갑"에게 반환하거나 "을"의 점포 운 영 보증금(선입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확약하고 계약합니다.

⑤ 추가수수료는 "갑"이 "을"에게 지속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시혜적인 항목일 뿐이며 지급 의무가 없는 항목으로 "갑"의 경영적 정책에 따른 타이어 종류별 주문관리, 재고관리, 판매실적 등을 평가하여 총 추가수수료의 50% 안의 범위에서 차등하여지급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수수료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됨을 확인합니다.

'모든 수수료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됨을 확인함'

확인자 성 명 : (인)

다. 점포운영 수수료의 계산

- 1. 판매수수료(사업주 수입금) = 매출액 본사 상품대금 정산
- 2. 본사 상품대금 정산 = 공장도 금액 판매수수료율 금액 + 위탁판매약정금액의 25% -각종 추가수수료

라. 수탁수수료의 지급

"을"이 점포운영보증금 2억원을 "갑"에게 완납한 경우와 완납하지 않은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1. "을"이 점포운영보증금 2억원을 "갑"에게 완납한 경우에는 익월 말일까지 위탁 판매수수료 전액을 지급합니다.

- 2. "을"이 점포운영보증금 2억원을 "갑"에게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갑"은 "을"로 부터 점포운영보증금 2억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을"에게 지급할 위수탁수수료에서 점포운영보 증금을 우선 충당하기로 합니다.
- 3. 위 2항에 해당 되는 경우 "을"에게 점포운영 및 사업주 생활에 필요한 수탁수수료만 지급하고 나머지 수탁수수료는 점포운영보증금(선입금)으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 4. "을"이 적립한 점포운영보증금(선입금)은 계약 해지 시 계약 해지 정산서를 작성하고 정산서 내용으로 전액 지급됨을 확인하고 계약합니다.

년 월 일

| [갑] | | | [을] | | | |
|---------|----------------------------------|--------|---------|-----|--|--|
| 상 호 | 타이어뱅크(| 상 | <u></u> | | | |
| 사업자등록번호 | 314-81-61623 | 주민등록번호 | | | | |
| 대표이사 | 이 재 진 | 대 | 丑 | (인) | | |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어진동,세종뱅크빌딩) | 주 | 소 | | | |
| 연 락 처 | 044-850-1000 | 연 | 락 처 | | | |